



시 보



제1649호 2024. 7. 9.(화)

조 례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7
-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22
-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31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7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65
-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목포시 해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70
-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76
-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8
-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83
-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85
-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 국가유신체제 전환(국가유신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규 칙

-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28

고 시·공 고

- 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 발령----- 130
- 목포시 요트 ‘해맑은호’ 운영지침 발령----- 178
- 목포시 금연구역(공동주택) 지정 공고----- 186

회람							
----	--	--	--	--	--	--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94 호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부터 제9조까지”로,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

우에는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제4조(여비지급) (생략)</p> <p><신설></p> <p>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u>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u></p> <p>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u>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u></p> <p>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정활동비를</u> 지급하지 아니한다. <u>다만, 의원이</u></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 ----- -----<u>.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여비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u></p> <p><삭제></p> <p>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 ----- <u>제2조부터 제9조까지</u>-----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u> -----</p>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 . <단서 삭제>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 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95 호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로 한다.

제9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

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

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5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결과제출)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내용
2. 행사 세부내용 및 행사 결과
3. 행사 참여인원
4. 그 밖의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제9조(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p> <p>① (생략)</p> <p>② ~ ⑥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제9조(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0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p>제11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p>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신설>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4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

<신 설>

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

제15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 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④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5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신 설>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결과제출)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내용
2. 행사 세부내용 및 행사 결과
3. 행사 참여인원
4. 그 밖의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목포시의회 포상사실확인서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훈 격	목포시의회 의장
표 창 번 호		수 여 일 자	

위 사람은「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을 수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의회의장 ○○○ (직인)

후원명칭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후원예정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위 행사에 대한 목포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div>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후원예정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승인시 검토한 사항							
승인사유							
기타 참고사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96 호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u>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 ----- -----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797 호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목포시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하자검사와 체

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보수)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계약 상대방은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 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 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③ 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목포시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하자보수관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

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목포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798 호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은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1(옥암동)에 둔다.

제3조(시설) ① 임대아파트는 여성 근로자 및 저소득층 여성의 지원을 위해 목련아파트(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둔다.

② 생활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5,552평방미터)이며, 42,9754평방미터형 120세대의 세대 당 내부구조는 침실 1명용 1칸, 침실 2명용 1칸,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창고로 구분된다.

③ 복지시설의 규모는 지상 4층(1,378평방미터)에 복지관리사무소,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을 둔다.

제4조(업무) 임대아파트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생활관 입주 허가 및 입주자 관리
2. 에어로빅실(명화감상실) 운영
3. 근로자 상담실 운영
4. 휴게실 운영
5. 근로자 도서실 운영
6. 근로자 취미실 운영
7. 강당 겸 예식장 운영

제5조(사용 대상자) ① 생활관 입주 대상자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과 통근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에 공실이 발생할 때는 관내 거주 1인 여성에 대해 전체 세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시킬 수 있다.

②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는 시 관내 및 인근지역 근로자로 하며,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 허가)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입주보증금·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 ①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관 입주 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한 자
2. 전염병 질환자
3.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용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사용 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가한 자
5. 퇴사한 자. 다만, 입주 기간 중 퇴사하여 구직을 준비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사용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7. 생활관 운영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② 시장은 복지시설 사용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복지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복지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4.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0조(원상회복)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 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 위탁 및 입주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제11조제3항의 위탁 기간은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입주 중인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입주자로 본다.

[별표]

생활관 사용 요율표(제7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입 주 보증금	세대(호실)당	1,000,000원	◦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 공단 임대주택 운용기준을 준용하여 세대(호실)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 사용료	세대(호실)당	40,500원	◦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 공단 임대주택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복지시설 사용 요율표(제7조 관련)

시 설 명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강 당 (예식장)	5.1-10.31	1회 (2시간이내)	15,000원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20상당 금액가산 (야간 사용시 100의 20 가산)
	11.1-다음연도4.30	1회 (2시간이내)	15,700원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99 호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범죄피해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800 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제11조 중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p>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 ----- -----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801 호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앞에 절 번호 “제5절”을 “제4절”로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1] 품종 구분기준의 비품과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 10만원”을 “취득단가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제5절 검사 및 인계</u></p> <p><u><신 설></u></p> <p>[별표1]</p> <p>○품종구분 기준</p> <p>(1) 비 품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p> <p>(2) 소모품 - ① ~ 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 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 에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p>	<p align="center"><u>제4절 검사 및 인계</u></p> <p><u>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u></p> <p align="center"><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p> <p align="center"><u>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u> <u>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u> <u>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u> <u>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u> <u>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p> <p>[별표1]</p> <p>○품종구분 기준</p> <p>(1) 비 품 -① (현행과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② ----- ----- -----50만원 -----</p> <p>(2) 소모품 - ① ~ ③ (현행과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④ ----- -----50만원 ----- -----</p>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802 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목포시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매각 및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소관 팀장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 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9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803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 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 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u></p> <p><u>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 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u>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 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804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청년국”을 “기획관리국”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을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사실, 큰목포기획단”을 “감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기획청년국에 두는 과)”를 “(기획관리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청년국에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를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큰목포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정보보호, 4차산업혁명”을 “정보보호”로 한다.

2. 지역 통합 협력, 의대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도·감독, F1대회 지원”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정책·다문화가족”을 “여성·가족정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국제교류 및 협력, 미래성장산업, 4차산업혁명, 스마트도시,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인구정책, 이민·외국인 정책, 출생장려에 관한 사항
4.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경제수산환경국에 두는 과)”를 “(해양수산환경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에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를 “해양수산환경국에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5호) 중 “탄소중립, 에너지 관리”를 “탄소중립”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1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에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로,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를 “대중교통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호의2) 중 “중대재해”를 “자연재난, 중대재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전반, 가로등”을 “전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공원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공원국에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경관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전반, 공동주택 관리, 주택 공급, 건축 허가, 건축 안전, 주택사업특별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조성·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안전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출산지원, 만성질환”을 “만성질환”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의”를 “동의”로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수산환경국,”을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발전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을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

②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⑥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기획청년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기획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청년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을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도시공원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⑧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⑨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⑩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기획청년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⑫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청년국장·경제수산환경국장”을 “기획관리국장·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⑬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기획청년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을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목포시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1호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기획청년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을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⑯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맑은물사업단장, 도시발전사업단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맑은물사업단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개발과장”으로 한다.

⑲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㉖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㉗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㉘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

㉙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및 제26조 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각각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㉚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㉛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㉜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관리담당”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하며, 제10조 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을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㉕ 목포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㉖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㉗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㉘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각각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㉙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안전관리담당”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㉚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환

경보호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③⑥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관광문화교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⑦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③⑧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③⑨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별표2부터 별표4까지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며, “해양항만과”를 “해양개발과”로 하고, “도시문화재과”를 “도시유산과”로 한다.

④⑩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④⑪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3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⑫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⑬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개발과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⑥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도시문화재과장”을 “도시유산과장”으로 한다.

⑦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으로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맑은물사업단 · 수 도 과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청년국</u>, <u>자치행정복지국</u>, <u>관광문화교육국</u>, <u>경제수산환경국</u>, <u>안전도시건설국</u>을 둔다.</p>	<p>제4조(국의 설치) ----- ----- <u>기획관리국</u>----- ----- - <u>미래전략산업국</u>, <u>해양수산환경국</u>, <u>도시공원국</u>, <u>안전건설교통국</u>-----.</p>
<p>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직속에 <u>감사실</u>, <u>큰목포기획단</u>을 둔다.</p> <p>② (생략)</p> <p>③ <u>큰목포기획단장은 지역 통합협력, 의대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p>	<p>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 <u>감사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6조 (<u>기획청년국에 두는 과</u>) ① <u>기획청년국에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u>를 둔다.</p> <p>② <u>기획청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생략)</p> <p>2. <u>일자리·고용 업무, 청년정책, 인구정책, 스마트그린산단에 관한 사항</u></p> <p>3. ~ 5. (생략)</p>	<p>제6조 (<u>기획관리국에 두는 과</u>) ① <u>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큰목포기획단</u>----- -----.</p> <p>② <u>기획관리국장</u>----- -----.</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역 통합 협력, 의대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u></p> <p>3. ~ 5. (현행과 같음)</p>

6. 정보·통신 운영, 정보·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4차산업혁명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의전·청사방호, 시 행정·행정구역조정·선거, 동향, 시민과의 소통, 동행정 지도·감독, F1대회 지원, 조직·인사·교육·훈련, 문서·기록물 관리, 공무원단체 및 후생, 공무원 운영, 고향 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정책·다문화가족, 드림스타트, 결혼중개업 업무에 관한 사항

5. (생략)

<신설>

6. -----
----- 정보보호 -----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지도·감독 -----

2.·3. (현행과 같음)

4. ----- 여성·가족정책 -----

5. (현행과 같음)

제9조(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전통 시장,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국제교류 및 협력, 미래성장산업, 4차산업혁명, 스마트도시,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인구정책, 이민·외국인 정책, 출생장려에 관한 사항

4.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수산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수산환경국에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경제수산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제10조(해양수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환경국에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

② 해양수산환경국장-----
-----.

<삭 제>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산단조성, 산단분양 업무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 환경위생, 환경지도,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생략)

<신설>

1.·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삭제>

3. -----
----- 탄소중립 -----

4.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1조(도시공원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공원국에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경관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전반, 공동주택 관

리, 주택 공급, 건축 허가, 건축 안전, 주택사업특별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압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조성·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건설국에 도시 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산업단지 조성(토목공사), 경관 기획, 도로·경관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

----- 대중교통과-----.

② 안전건설교통국장-----.

<삭 제>

1의2. 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전반, 기반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 전반, 가로등, 새마을공동시설물, 과적차량, 방조제, 노점상단속, 옥외광고물, 자전거정책 운영 전반 업무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6. 도시공원조성·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공유 입야, 유달산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보건소에 두는 과) ① (생략)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1. -----

----- 자연재난, 중대재해 -----

<삭 제>

2. ----- 전반 -----

3. ·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삭 제>

제13조 (보건소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독한다.

- 1. ~ 3. (생략)
- 4. 건강증진, 지역보건, 모자보건, 출산지원, 만성질환, 방문보건, 질병예방,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5. (생략)

제17조(소관사무) 사업단·소별 단장 및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도시발전사업단
 - 가.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재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원도심사업 관련 개발행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 3. ~ 7. (생략)

제18조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
만성질환-----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소관사무) -----

-----.

- 1. (현행과 같음)
- <삭제>

- 2. ~ 6.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8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의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맑은물사업단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남약신도시하수처리장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시민문화체육센터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목포체육관 - 실내수영장 - 유달경기장 - 시립정구장 - 시립테니스장 - 시민테니스장 - 목포파크골프장 - 부주산테니스장 - 목포시공도장 - 부주산축구장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 부주산족구장 - 영산호카누경기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목포자연사박물관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음식물자원화시설 - 환경에너지센터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고하대로 1140-73(대양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맑은물사업단 · 수 도 과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805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0%이내	6.3%이내	21.4%이내	34.0%이내	27.0%이내	10.3%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7% 이내	93% 이상	6% 이내	94%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4	1,354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6급이하	1,272	1,272				
연구직계	16	16				
연구관	1				1	
연구사	15	15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2% 이내</td> <td>98% 이상</td> <td>6% 이내</td> <td>94%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 이내	98% 이상	6% 이내	94% 이상	<p>[별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7% 이내</td> <td>93% 이상</td> <td>6% 이내</td> <td>94%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7% 이내	93% 이상	6% 이내	94%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 이내	98% 이상	6% 이내	94%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7% 이내	93% 이상	6% 이내	94% 이상																																																																																																																																																																																																															
<p>[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374</td> <td colspan="5">1,374</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1,353</td> <td colspan="5">1,353</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9</td> <td>5</td> <td>1</td> <td>1</td> <td>2</td> <td></td> </tr> <tr> <td>5급</td> <td>71</td> <td>31</td> <td>3</td> <td>3</td> <td>11</td> <td>23</td> </tr> <tr> <td>6급 이하</td> <td>1,272</td> <td colspan="5">1,272</td> </tr> <tr> <td>연구직계</td> <td>17</td> <td colspan="5">17</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7</td> <td colspan="5">17</td> </tr> <tr> <td>지도직계</td> <td>3</td> <td colspan="5">3</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3</td> <td colspan="5">3</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3	1,353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1	31	3	3	11	23	6급 이하	1,272	1,272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p>[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374</td> <td colspan="5">1,374</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1,354</td> <td colspan="5">1,354</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10</td> <td>7</td> <td>1</td> <td>1</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71</td> <td>34</td> <td>3</td> <td>3</td> <td>8</td> <td>23</td> </tr> <tr> <td>6급 이하</td> <td>1,272</td> <td colspan="5">1,272</td> </tr> <tr> <td>연구직계</td> <td>16</td> <td colspan="5">16</td> </tr> <tr> <td>연구관</td> <td>1</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5</td> <td colspan="5">15</td> </tr> <tr> <td>지도직계</td> <td>3</td> <td colspan="5">3</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3</td> <td colspan="5">3</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4	1,354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6급 이하	1,272	1,272					연구직계	16	16					연구관	1				1		연구사	15	15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3	1,353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1	31	3	3	11	23																																																																																																																																																																																																													
6급 이하	1,272	1,272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4	1,354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6급 이하	1,272	1,272																																																																																																																																																																																																																	
연구직계	16	16																																																																																																																																																																																																																	
연구관	1				1																																																																																																																																																																																																														
연구사	15	15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806 호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 등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목포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포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목포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 및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807 호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8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808 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자연사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② (생략) <신 설>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②(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809 호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에 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상위법이나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u>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	제3조(책무) ----- ----- <u>시책에 관한 대상, 방법, 범위를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u> 단, 상위법이나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법을 준용한다.
제7조(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① (생략)	제7조(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810 호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목포시 명장"이란 목포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분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목포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명장 신청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명장 업무 담당 국장

4.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선정·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법인·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직종별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민 30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동일 직종에서 3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이나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지정한 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10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점수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제13조(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함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5.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6.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명장 선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8.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9.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10. 그 밖에 시와 명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은 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명장 승계)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811 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4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목포시 위원회 중 3개를 초과하여 겸임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한 <u>40명</u>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p> <p>② ~ ④ (생략)</p> <p>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축제추진위원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p>	<p>제3조(구성) ① ----- ----- ----- <u>30명</u> ----- ----- . 단 <u>만, 목포시 위원회 중 3개를 초과하여 겸임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소집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p>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812 호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

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선박·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6.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의 주민참여
8.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9.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10.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지원 정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 관리) ① 시장은 항만과 공단이 입지한 목포시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이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비고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
2.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3.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 및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3.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4. 농기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제한
5.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6.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강화
7.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 감시
8.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
9.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3장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 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로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813 호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보조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함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814 호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목포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815 호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입주자격) 8.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긴급 주거지원)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 1항에 따른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순위에 관계 없이 접수순으로**”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호실 배정은**”을 “**모집하는 호실이 2호 이상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과**”를 “**다른 입주 예정자와**”로 한다.

4. 제4순위 :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를 “음식물쓰레기스티커구입비, 개별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별표 1을 다음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4조(입주자격)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u></p> <p><u>제4조의2(긴급 주거지원)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여 할 수 있다.</u></p> <p><u>1.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u></p> <p><u>② 제 1항에 따른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u></p>
<p>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p>	<p>제7조(입주자 선정) ① -----</p> <p>-----</p> <p>-----</p> <p>-----</p> <p>-----</p> <p>-----</p>

다만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④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차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6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순위 :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7조제1항에 따라 -----
-----.

④ 모집하는 호실이 2호 이상일 경우 --. -----
----- 다른 입주 예정자와 -----

제9조(임대차계약) ①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① -
----- 음식물쓰레기스티커구입비, 개별수도요금 -----

② 시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달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20일-----

-----.

③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 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 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816 호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 ③ (생략) <신 설>	제5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817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를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라남도무형문화재로”를 “전라남도무형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무형문화재 기·예능”을 “무형유산 기·예능”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를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6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5.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내에 있는 유산으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를 “목포시향토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유산 지정)”을 “(국가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유산 주변”을 “향토유산 주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문화유산 보존”을 “향토유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

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 관련분야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단체)문화유산”을 “(개인·단체)향토유산”으로,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별지1호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3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718호(이하 “등록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제718호(이하 “국가등록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록문화재가”를 “등록문화유산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등록문화재와”를 “국가등록유산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유산”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등록문화재가”를 “국가등록유산이”로 한다.

별표 2, 3호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4조(「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의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 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 보호조례”를 “「국가유산 보호조례」”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한다.

제8조(「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9조(「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11조(「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라남도 국가유산
보호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국가
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제13조(「목포시 경관 조례」의 개정)

목포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2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1호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15조(「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1항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7조의4제3항중 “중요문화재”를 “중요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8조제8호나목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0조의3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3조의3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1.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u>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5조 및 「<u>지방자치법</u>」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목포시 <u>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목포시 <u>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이하 “전수관” 이라한다.)” 이라 함은 목포시 <u>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전수 교육을 위해 운영 되어진 시설을 말한다.</p> <p>2. (생략)</p>	<p><u>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u></p> <p>제1조 (목적) ----- <u>무형유산</u>의 ----- 위하여 「<u>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5조 ----- ----- <u>무형유산 전수교육관</u>----- -----.</p> <p>제2조 (정의) ----- -----.</p> <p>1. ----- <u>무형유산 전수교육관</u>----- ----- <u>무형유산</u>의 ----- -----.</p> <p>2. (현행과 같음)</p>

3.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것 중 목포시에서 보존·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옥공예전시관) : 목포시 남농로 83(용해동)
2. (생략)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 4.·5. (생략)

제5조 (운영) 시장은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3.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전라남도무형유산으로-----

-----.

제3조 (명칭 및 위치) -----
-----.

1. ----- 국가무형유산 -----

2. (현행과 같음)

제4조 (업무 및 기능) -----
-----.

1. 무형유산 -----

2. 무형유산 -----

3. 무형유산-----

--
- 4.·5. (현행과 같음)

제5조 (운영) -----
----- 무형유산 -----
-----.

한다. 다만,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및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시장은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7조 (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 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실 관람)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시실의 관람은 무료로 하고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탁 운영) ①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

무형유산 기·예능 -----
-----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
---- 국가무형유산 -----

-----.

제7조 (전시물의 관리) -----
-- 국가무형유산 -----

-----.

제8조 (전시실 관람) ----- 국가무형유산 -----

-----.

제9조 (위탁 운영) ①-----

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

② (현행과 같음)

2.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이 조례에서 목포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p>	<p>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p> <p>제1조(목적) ----- 향토유산----- ----- -----.</p> <p>제2조(용어의 정의)</p> <p>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p>

따른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

2. 그 밖에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유산 중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5.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

제3조(위원회)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④ (생략)

⑤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국·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내에 있는 유산으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 향토유산의 -----
----- 목포시향토유산위원회-----
-.

②----- 국가유산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향토유산 -----
-----.

⑥-----
----- 향토유산 -----
-----.

제4조(기능) -----
-----.

1. 향토유산-----
2. 향토유산-----
3. 향토유산 -----
-
4. 향토유산-----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생략)

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생략)

③ (생략)

제6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제8조(문화유산 지정) ①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향토유산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유산 지정) ① -----

----- 향토유산 -----

-----.

②향토유산 -----

-.

③----- 향토유산 -----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으로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지정해제) ①시장은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제11조(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

-----.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향토유산-----

-----.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
향토유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해제) ①-----

-----.

1. 향토유산-----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시) ----- 향토유산-----

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 및 목포시인터
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
다.

제12조(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필
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
지소유자, 보존·보호에 의지
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
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
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동
장을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
다.

③ (생략)

제13조(보존관리 및 점검) ① 문
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
야 한다.

2.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문화유
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문화유산의 주변 건

-----.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 향토유산 -----

-----.

②----- 향토
유산-----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존관리 및 점검) ① 향
토유산-----

-----.

1. ----- 향
토유산-----
-----.

2. ---- 향토유산의 -----
----- 향토유산 주
변-----
-----.

3. ---- 향토유산의 -----

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4조(기록보존) ①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등) ①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

----- 향토유산 보존 -----
-----.

4. ----- 향토유산-----

② ----- 향토유산의 -----

----- 향토유산 -----

-----.

제14조(기록보존) ①-----
----- 향토유산-----
-----.

②----- 국
가유산 관련분야에 -----

-----.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향토유산-----

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대외적(개인·단체)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②------(개인·단체)향토유산-----도 지정유산-----.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718호(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제718호(이하 “국가등록유산” 이-----.</p>

2. “단위건물유산” 이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건물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3. ~ 6. (생략)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
2. 등록문화재 원형보존기반 정

2. -----
----- 등록문
화유산이 -----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등록유산과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

-----.

- 1. 국가등록유산 -----

2. 국가등록유산 -----

비사업 계획

3. ~ 6. (생략)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현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재 및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수·정비사업

2.·3. (생략)

② ~ ④ (생략)

제30조(건축물 등의 매입) ① (생략)

② 매입대상 기준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문화재가 우선 구입대상이 되며, 단위건물유산과 경관을 훼손시키는 건축물 순으로 매입한다.

③·④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①

-----.

1. 국가등록유산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축물 등의 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등록유산이 -----

-----.

③·④ (현행과 같음)

4.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	제2조(정의) ----- -----. 1. ----- ----- -----

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

 -----.

2.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현행 제1항과 같음)

5.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 (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위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수를 위촉한다.</p> <p>1. 문화재 보호법 및 시·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p> <p>2.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6조 (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위촉) ①----- ----- -----.</p> <p>1. 「국가유산기본법」 ----- 「국가유산 보호조례」 --- 무형유산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6.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사업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p>	<p>제4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4. ~ 9. (생략)
- ③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 3. ----- 국가유산

- 4. ~ 9.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7.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국가유산 등----- - 6. (현행과 같음)

8.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② 시장은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②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 12. · 13. (생략)

-----.

-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 12. · 13. (현행과 같음)

10.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① “관급공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사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 화재 수리공사</p> <p>6.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p> <p>6. (현행과 같음)</p>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설치장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4.·5. (생략)</p>	<p>제6조(설치장소)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국가유산 ----- ----- ----- ----- -----.</p> <p>4.·5. (현행과 같음)</p>

1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p>	<p>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국가유산 보호 조례」 -- 국가유산으로 ----- ----- ----- ----- -----</p>

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략)

----- 국가유산보호구역안

-.

② (현행과 같음)

13. 목포시 경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경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생략) 2. <u>문화재</u> 3. ~ 5. (생략) ② (생략)	제39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u>문화재</u> 복원공사의 경우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국가유산</u> -----

1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17.></p> <p>1. ~ 5. (생략)</p> <p>6.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7. (생략)</p> <p>② (생략)</p> <p>③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u>중요문화재</u>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녹지지역의 다음 각 목의 어느</p>	<p>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u>문화유산</u> 부지 -----.</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중요문화유산</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
센트 이하

가. (생 략)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다. (생 략)

9. ~ 12. (생 략)

제50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
율의 완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
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
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150
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
록 문화유산

다. (현행과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 국가등록문화유산-----

제53조의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 국가등록문화유산-----

【별첨 3】 조례 제2조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6. 3.>

향토유산 관리대장

(앞면)

향토 유 산 명		유 형		지 정 번 호		
소재지 (주소)		지 정 년월일		연 대		
성 명	(년 월 일생)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규 모	부지면적 : m ² (평)	향토유산 현황				
연혁		건물명	규모 (m ²)	구조	관 리 상 태	비 고

조례 제3조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2] <신 설 2022.10.17.>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기준 (제20조제2항관련)

1. 신청 자격

-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유산 혹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지원 사업

-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내·외관 보수정비 사업
 - 가. 외관 :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
 - 나. 내부 : 건축물 내부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 및 재료의 보존 또는 노출을 위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단위건물유산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지원 대상의 특정 가치 유지를 위해 다다미, 목재 창호, 애자 등 새로운 재료 및 물건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현물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조건

- 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의 심의내용 반영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보존 관리지침 내용 준수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 기초조사, 심층조사 등의 소유자 동의

4. 지원 절차

가. 지원 신청

-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정비계획과 제5조의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① 시장은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위원회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연 등을 할 수 있다.

5. 지원 범위

- 내 · 외관 보수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 분	지원 기준	비 고
국가 등록유산 보 수	- 공사비용 지원 제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수리 지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추진)	
근대건축문 화유산 보 수	- 건축물 내·외관 정비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건축물 보존을 위한 긴급보수, 외관정비, 내부 환경 개선)	최대 2천만원 지원
가로경관 건 축 물 외관정비	- 건축물 외관 정비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담장, 대문, 간판시설 포함)	최대 1천만원 지원

- ※ 지원사업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용으로 산정함
- ※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한함 (단, 종교집회장이나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은 제외)
- ※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함
- ※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 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함
- ※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받은 자는 공사 착공 전 · 후 각각 15일 이내 목포시에 신고하여야 함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보존 관리지침 (제5조제4항관련)

건축물 (외관)	높이	<p>일반 건축물이 국가유산, 근대건축문화유산 등과 인접 한 경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 시 인근의 국가유산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하여야 함</p> <p>ㄱ. 국가유산과 인접한 경우, 국가유산 건축물보다 낮은 높이로 계획할 것을 권장</p> <p>ㄴ. 국가유산과 근접한 경우, 국가유산 건축물 높이의 150% 범위까지 계획하도록 권장</p> <p>ㄷ. 조망점 기준으로 국가유산의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 높이를 계획</p>
	배치	<p>- 공간 내 주요 격자형 가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현재의 배치를 존중하며 경관을 유지하여야 함</p> <p>- 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가능한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p>
	형태	<p>- 건축물의 지붕 형태는 역사적 건축물의 지붕유형(박공지붕, 모임지붕, 합각지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p> <p>- 경사지붕의 경우, 구배는 3/10 이상, 1 이하가 되도록 하며, 인접한 건축물과 처마선이 연속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p> <p>- 지나치게 조형을 강조한 건축물은 지양함</p>
	구조	<p>- 진정성 확보 : 근대건축물 국가유산 수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현재의 구조를 보장</p> <p>- 벽돌공사, 석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시 원래 형태와 유사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권장</p>
	재료	<p>- 건축물의 외관 및 내부를 수리할 경우 고증 과정을 거쳐 마감재료 유형을 참고하여, 건물 원형의 재료와 구법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외부 : 기와, 비늘판벽, 붉은벽돌, 평합석, 회벽 / 내부 : 다다미, 장마루, 인조석)</p> <p>- 건축물 외관을 수리할 경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주재료의 사용 제한 (과도한 반사성 재료, 원색계열의 도료·방수재, 지나친 토속적 재료)</p>
	색채	<p>- 건축물 외관을 도색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권장색채(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사용 범위를 참고하여, 조화될 수 있는 색채로 적용하며 원색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p>

옥 외 시설물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정면에 1업소 1옥외광고물 설치 권장 - 과도한 크기는 지양하고 옥외광고물 하단 높이를 정렬하여 연속적인 경관 연출 - 판류형보다는 입체형으로 디자인된 간판 사용 권장 - 목재, 철재 등 내구성 있는 재질과 동일 건축물에는 동일한 재질 사용 권장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을 지양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색 온도(3000k)의 광원 사용 권장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업 등 조명연출 방법을 고려하고, 차분하고 은은한 분위기 연출 권장 - 직접광원 노출, 등기구 노출, 현란한 빛의 움직임 지양함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에 인접한 담장 높이는 1.8m 이하로 하고, 주변 경관에 적합한 재료와 형태로 설치하도록 권장 - 지나치게 토속적인 재료(장대석, 통나무, 황토벽 등)는 지양함 																										
	외부 부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은 가능한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함 - 건물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외벽 재료와 동일계열 색상으로 도장하도록 권장 																										
도 로 부속물	가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전깃줄을 없애 거리경관 개선 - 가로등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공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배치 - 과도한 홍보물(현수막, 배너) 부착 지양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수목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등으로 경관조성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 																										
	도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패턴을 적용한 보도와 차도 설치 - 보도는 화강석 판석, 석재타일, 고압블록, 점토블록 사용 - 맨홀커버는 보도공간과 조화되도록 계획 																										
건축물 용도의 권 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구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건축법상 용도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용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목포진 역사공원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종 근린생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 다중주택, 공중화장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 및 집회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시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공서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 및 집회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시장</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거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종 근린생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을회관,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상업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종 근린생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 및 집회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시장</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해안로시장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종 근린생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 및 집회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시장</td> </tr> </tbody> </table>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 용도	목포진 역사공원 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중화장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관공서 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주거 지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상업 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해안로시장 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 용도																									
	목포진 역사공원 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중화장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관공서 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주거 지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상업 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해안로시장 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를 준수한 대지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음 - 지역 특성과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프렌차이즈 시설은 제한함 																												

조례 제9조(「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2] <개정 2022.12.19.>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인재육성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
3.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자치행정과
4.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기획예산과
5.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폭염·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해양항만과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스포츠산업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위생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사. 미세먼지	수 도 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12.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지역경제과 (해당부서)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 설 과 교통행정과 건 설 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행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15.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7.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1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시설 사고	도시문화재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20.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항만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건강정책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조례 제14조(「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별표 1] 〈전부개정 2018.2.5.〉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제3조 관련)

영역	중분류	세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	
① 공공공간	다중이용	여가휴게	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관광휴양	해수욕장, 관광지 등	
		체육공간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가로공간	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항만	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환경기반	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도시·마을	문화특화	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역사특화	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산업특화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건축	공공청사	행정	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보건복지	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다중이용건축	문화집회	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교육수련	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자동차	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기타공공건축	환경기반	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계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휴게편의	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공인프라	도로구조물	도로개설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도로부속	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가로시설물		교통보행	웬스, 불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	
		가로녹지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편의휴게	파고라, 벤치, 쉼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공급관리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매체	정보매체	교통안내	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정보안내	정보안내도(관광, 국가유산,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국가유산, 마을)등	
	환경연출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공공매체광고물		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공이미지	상징물	조형상징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이미지	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공공용품	행정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	
		개인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 공공디자인정책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규칙 제 1873 호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관리대상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p> <p>② <신 설></p> <p>③ <신 설></p>	<p>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u>③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u></p>

목포시 훈령 제857호

「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4년 7월 5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속기관”이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채용협의,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각 부서(실·과 등 명칭을 불문)를 말한다.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0. "대체인력"이란, 제1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뱅크"란, 목포시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관리·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시와 그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목포시가 정하는

조례 및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비공무원 채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중요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 이상의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조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직급별 응시자격을 포함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필기·면접시험 등)을 도입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 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관리부서, 사용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인증제도(국민체력100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와 소속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부서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부서로 채용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7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과건·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

여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단,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조를 거쳐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인력의 임용)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또는 사용부서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원 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원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전형에 1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목포시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3.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

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4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14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

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할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고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9조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비리 발생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 1부
3.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 등·초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및 부패방지 체크리스트 각 1부
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목포시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목포시 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1. 채용 배경

- 결원이 발생한 분야(사무원·시설관리·운전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 공개경쟁채용·제한경쟁채용으로 직무능력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저소득층) 병행

2. 관련 규정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 「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

3. 채용 개요

채용 분야·방법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지)	선발예정 인원	채용 사유	채용방법	비고
공무원 (사무원)	○○과 (◇◇동)	1	퇴직(00.00.00.) 결원 충원	공개경쟁채용	변경 공고*
기간제 (시설관리)	●●소 (◆◆동)	1	육아휴직(00.00.00~00.00.00.) 대체 인력 충원	제한경쟁채용 (자격증·경력)	
기간제 (운전원)	◎◎팀 (□□리)	1	질병휴직(00.00.00~00.00.00.) 대체 인력 충원	제한경쟁채용 (사회형평-장애)	9개월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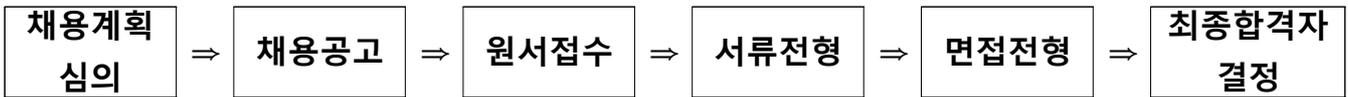
* (예시) 최초 공고(00.00.00. 공고)·재공고(00.00.00. 공고) 시 제한경쟁채용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미달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 변경 공고 결정(00.00.00. 인사위 의결 사항)

채용 분야 근로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공무원 (사무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보수 기재
기간제 (시설관리)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기간제 (운전원)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4. 채용 절차 및 추진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만 실시하는 채용 시(필기시험 등 별도전형 추가 시 반영 필요)



- 채용계획 인사위 상정 및 심의·의결: '00.00.00.(O) ~ '00.00.00.(O)
- 채용공고: '00.00.00.(O) ~ '00.00.00.(O)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5일 전
 - ※ 목포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원서접수 : '00.00.00.(O) ~ 00.00.00.(O) * 최소 3일 이상 접수 기간 설정
 - ※ 우편접수(주소 명기), 전자우편 접수(000@korea.kr) * 둘 이상의 방법으로 접수
 - 채용절차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노력
- 서류전형 : '00.00.00.(O) ~ '00.00.00.(O)
 - ※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원서접수 완료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0.00.00.(O)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채용절차법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한정 증빙자료 제출 노력
- 면접전형 : '00.00.00.(O)
 - ※ 면접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최종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00.00.00.(O) ~ '00.00.00.(O)
 - ※ 응시자격·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 시) 채용점검위원회 실시 : '00.00.00.(O)
- 최종합격자 발표 : '00.00.00.(O)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채용 예정자 관련 서류 접수 : '00.00.00.(O) ~ '00.00.00.(O)
 - ※ 채용 예정자 신원조사(조회), 결격사유, 경력조회, 취업제한 여부 등
- 채용 예정일 : '00.00.00.(O)
 -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 00세 이상인 자로(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사무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기간제 (시설관리)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간제 (운전원)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인 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6. 시험방법

채용분야	서류전형(선발 배수)				
공무직 (사무원)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점 + 가점	50	35	15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기간제 (시설관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기간제 (운전원)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채용분야별 시험방법이 상이할 경우 상단의 표와 같이 구분 필요(동일한 경우 해당없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정량·정성평가) 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공무직(사무원)의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임에 따라 10배수(10명)으로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예정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7. 심사위원 위촉

채용분야	서류전형	면접전형	비고
공무직 (사무원)	3인(내부 2인·외부 1인)	4인(내부 2인·외부 2인)	-
기간제 (시설관리) <small>*9개월 이상 근무</small>	2인(내부 2인)	3인(내부 2인·외부 1인)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기간제 (운전원) <small>*9개월 미만 근무</small>	2인(내부 2인)	3인(내부 3인)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 기간제(시설관리·운전원)은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에 따른 서류전형 내부위원 구성
- 기간제(운전원)은 계약기간 6개월 이하에 따른 채용으로, 면접전형 모두 내부위원 구성
- 구체적인 전형위원 구성(안)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 원서접수 완료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 지원자 중 내부 직원이 있을 경우,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노력 실시(예시 :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 구성 전 제척 대상 여부 검토 및 전형일 당시 심사위원 회피의무 안내 및 서약서 징구·사전교육 실시를 통한 채용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회피·기피 상황 발생 시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
 - (나머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 부여
 -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는 심사위원이 다시 평가에 참여
 - (나머지 심사위원이 1명 이하인 경우) 사전에 예비 심사위원을 확보하고,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예비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
 -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 당초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단, 회피(기피) 해당 응시자가 최초 응시자일 경우 예비 심사위원이 계속 평가 시행 가능)

8.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공무직 (사무원)	1명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기간제 (시설관리)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기간제 (운전원)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계약기간 6개월 이하

* (예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잦은 임용포기·퇴직으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3배수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는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임용포기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3배수 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기간제(운전원)의 경우는 근무 기간이 9개월 미만임에 따라 예비합격자 운영기한을 3개월로 단축

붙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전형별 심사기준표 및 시험 채점표 등 각 1부. 끝.

<별지 제2호> 목포시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목포시 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시) 공고 제0000-00호

○○부(○○시)에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공무원 (사무원)	1명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과 (◇◇동)
2	기간제 (시설관리)	1명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소 (◆◆동)
3	기간제 (운전원)	1명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팀 (□□리)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연번 2,3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 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번 2, 3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 00세 이상인 자로(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사무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기간제 (시설관리)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인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간제 (운전원)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인 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 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자격증)	
(사무원)	100점 + 가점	50	35	1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10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O) 홈페이지 공고 				
기간제 (시설관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기간제 (운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지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O)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기간제 (시설관리)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기간제 (운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사무원)	1명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간제(시설관리)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간제(운전원)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기간제(운전원)의 경우는 근무 기간이 9개월 미만임에 따라 예비합격자 운영기한을 3개월로 단축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OO부(OO시) 누리집, 워크넷 등
원서접수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00.00.00.(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00.00.00.(O)	OO부(OO시) 누리집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면접전형	00.00.00.(O)	
최종합격자 발표일	00.00.00.(O)	OO부(OO시) 누리집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채용 예정일	00.00.00.(O)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OO부·OO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00.00.00.(O) 09:00~ 00.00.00.(O)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편주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korea.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공무직 (사무원)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기간제 (시설관리)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기간제 (운전원)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 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사무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과 (◇◇동)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보수 기재
기간제 (시설관리)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소 (◆◆동)		
기간제 (운전원)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팀 (□□리)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부(○○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00.00.00.()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00-000-0000)에게 문의

-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응시자격 기준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음

자격증·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구분	자격기준
시설관리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원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사무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사회형평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한경쟁채용

구분	자격기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별지 제7호>서류심사 채점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

계약형태	공무직/기간제	직 종		응시 번호	
성 명					

필수요건 구비여부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여 / 부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여 / 부

구 분	세부기준	배 점	평가점수
지원분야 경력 (30점)	◦ 경력없음 ~ 1년 미만	10	
	◦ 1년이상 ~ 2년미만	20	
	◦ 2년이상	30	
지원분야 자격증 (10점)	◦ 산업기사, 기능사 등	5	
	◦ 기술사, 기사 등	10	
지원분야 적합성 (60점)	◦ 소통·화합 능력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 추진력, 업무성취 경험 ◦ 성실성·책임감 ◦ 지원동기, 청에대한 이해	60	
계 (100점)			
감점	◦ 블라인드 채용 위반(학력, 출신지, 성명 등 기재)	-10	
	◦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 따름(세부기준)	5, 10	
합계			

특이사항	*
------	---

채점일	20 . . .	채점자	직 급	
			성 명	(서명)

<별지 제8호> 서류심사 집계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집계표

- 근무부서 :
- 모집단위 :
- 채용인원 : 명 (응시인원 명)

응시 번호	성 명	자격요건 구비여부	채점결과		합계	평균	순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시험 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 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를 무시하거나 권위적·고압적인 발언 등으로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

- 면접시간 중 화장실 출입, 휴대전화 사용, 줄음 등은 수험생 주요민원 제기 요인이므로 유의

- * 시험보안관계상 중식시간 등 시험실을 비우는 시간대는 일체의 면접 관련 서류를 심사위원 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람
- * 면접종료 후에는 모든 면접자료를 시험시행본부에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면접 표준질문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분	중점평가항목	질문 및 검토사항 예시
1.공무직근로자로 서의 정신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식 - 청렴성 - 우리 기관에 대한 기대 - 근무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1분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 평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는? - 자신이 공직에 와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000소속 공무직의 자세는? - 0000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고, 평소 가졌던 생각은? - 지금까지의 좋은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에 필요한 전문지식 - 교양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전문분야 및 특징은? - 본인이 가장 내세울 만한 업무실적은? 그 이유는? - 예정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 - 관련 영역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 선발 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그 분야에 대해 남들과 차별화된 전문성은?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의 전개방식 - 핵심의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또는 3분 스피치 후 평가 - 발표 내용의 논리정연성 판단
4.예의, 품행 및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도 - 복장 -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일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유는? -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 단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형은 무엇인가요?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와 의견충돌이 있다면?
5.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성 - 진취성 -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 지금까지 성과를 얻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본인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상급자가 본인을 신뢰하고 자주 일을 맡긴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일을 제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상급자가 본인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 -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일을 처리한 경험은? - 봉급이 박봉인데 생활할 수 있나요? - 장래에 대한 계획 및 포부는?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적 감 정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채용직종	
	본인필적	응시부서	○○○○과
성 명			수험번호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평정점수	평가등급		
		상(10점)	중(6점)	하(2점)
가. 공무원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10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점 수 합 계				
위 원 서 명	성명	(서명)		

※ 유의사항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응시분야	공무직 (○○○○○)	채용예정기관	○○○○○
------	----------------	--------	-------

수험번호	성명	심사위원 점수						가·감점	총계	순위
		1위원	2위원	3위원	합계	평균	합·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시험 위원 확인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공무직/기간제 (○○○○○)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추가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 합격자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2				
3				
4				

20 년 월 일

○○○○○ 귀하

<별지 제14호>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u>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지 제19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목포시 예규 제36호

목포시 요트 '해맑은호'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4년 7월 10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요트 '해맑은호'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목포시가 보유한 요트 '해맑은호'(이하 "해맑은호"라 한다)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해양관광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시민복지 실현 및 목포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맑은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해맑은호는 정기 수리 및 점검, 설·추석 등 명절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운항한다.

②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정각 출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항 경로) ①해맑은호의 운항 경로는 '목포마리나 → 고하도 → 목포대교 → 목포마리나'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주관 행사 참여, 해맑은호의 수리 및 점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항 경로를 임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승선 인원) ①해맑은호는 27인승 세일링 요트로서, 해맑은호 선장 및 기관

장(이하 “선장 및 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선을 고려하여 최대 승선 인원은 25 명으로 하며, 최소 승선 인원은 10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또는 목포시 홍보, 그 밖에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은 승선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요금) 해맑은호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6조(승선대상) ①신청 가능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1】의 세부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신혼부부
2. 출산가정
3. 기초생활수급자
4. 아동복지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홍보를 위해 승선하고자 하는 자, 그밖에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은 승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특별승선) ①매월 첫 번째, 세 번째 금요일은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은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대상자의 승선을 우선으로 한다.

②승선자의 요청이 있을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함께 승선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방법) ①해맑은호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1」에 따른 승선신청서 및 「서식2」에 따른 승선자 명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승선 대상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선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탑승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탑승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자가 제6조에 따른 승선대상 중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승선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승선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특보 발효
2. 해맑은호 긴급 수리 또는 검사
3. 승선 예정자의 과도한 음주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항

제10조(승선자의 의무) ①모든 승선자는 승선 전 비치된 승선원 명부를 작성한 후 승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장 및 기관장의 신분증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미성년자, 어르신, 장애인 등 보호·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선 시 관리감독자가 함께 승선하여야 하며, 그 최소 비율은 **【별표2】** 와 같다.

③모든 승선 예정자는 승선 전 선장 및 기관장이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선장 및 기관장은 승선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승선자의 의무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승선자는 승선에서 하선까지 선장 및 기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2. ‘해맑은호’가 계류장에 완전히 계류된 후 승·하선한다.
3. 실외로 나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 어르신, 장애인 등 보호·관리 감독이 필요한 승선자는 실내 체험을 원칙으로 하며, 실외로 나가고자 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동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계, 스위치 등 각종 장비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6. 갑판을 뛰어다니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7. 안전선에 기대거나 바깥쪽으로 몸을 내밀지 않는다.

8. 항해 중에는 금주, 금연하여야 한다.

⑤미취학아동을 제외한 모든 승선자는 하선 시 「서식 3」에 따른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지침의 수정)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 확인 등으로 지침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보완을 통해 운영내용을 조정한다.

부 칙 <24. 7. 15.>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4. 7. 15.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승선 대상별 세부 승선 규정
- 별표 2 -----승선 대상별 관리감독자 최소 승선 비율
- 서식 1 -----승선신청서
- 서식 2 -----승선원 명부
- 서식 3 -----해맑은호 운항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별표 1】

승선 대상별 세부 규정(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	세 부 규 정	비 고
가. 신혼부부	1)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인 부부 2) 현주소가 목포시로 되어있는 부부 3) 부부 중 한 사람이 마지막 전입일을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나. 출산가정	1) 영아의 출생지가 목포이며 신청일까지 목포시에 거주하며 주소지 변동이 없는 자 2)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영아의 나이가 2세 미만인 가정	영아 승선 시 영아의 가족 및 보호자를 승선 대상에 포함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	마지막 전입일을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라.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목포시인 아동복지시설	

【별표 2】

승선 대상별 관리감독자 최소 승선 비율(제10조 제2항 관련)

(단위 : 명)

대 상	대상자의 수	관리감독자의 수
13세 미만	2	1
13세 이상 19세 미만	5	1
75세 이상	4	1
장애인	중증 (1급 ~ 3급)	1
	경증 (4급 ~ 6급)	3

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일부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식 1」

해맑은호(요트) 승선신청서

사 용 자 (단 체 명)	
총 승선인원	
인솔인원	
대표 인솔자 (연 락 처)	
운항일자	년 월 일 시 ~ 시 (항차)
목 적	

위와 같이 해맑은호 요트 승선 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서식 2」

승선자 명부

(승선일: 년 월 일 시) 단체명 :

순 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휴대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목포시 금연구역(공동주택)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목 포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4. 7. 8.
- 공동주택 명칭 및 지정 범위

번호	명칭	범위	소재지
2024-2호	증흥 S-클래스 센텀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목포시 비파로 96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4. 7. 8. ~ 2024. 10. 6. (3개월)
- 과태료 부과일 : 2024. 10. 7. 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270-892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